

#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

제정 2007. 03. 19.  
개정 2009. 05. 11.  
개정 2011. 04. 13.  
개정 2014. 04. 30.  
개정 2019. 02. 12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 및 목적)** 이 규정은 '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'이라 하며,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【적용근거】**본 규정은 초.중등교육법 제8조, 제17조,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, 제31조, 「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(제3781호)」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교생활을 함께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
### 제3조 【학교 구성원의 책무】

- ①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,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학교장은 「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」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,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

### 제4조【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】

-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와 심의를 담당하고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'학교생활교육위원회'를 둔다.
- ② '학교생활교육위원회'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, 교사대표,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,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.

## 제3장 학생생활

### 제5조【기본품행】

- ①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,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

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.
-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.
- ④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,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.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
-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<sup>1)</sup>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.
- ⑥ 성(性)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
### 제6조【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】

-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준수한다.
-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,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.
- ③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, 정리정돈 등에 노력한다.
-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, 준비물을 가지고, 주어진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.
- ⑤ 수업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, 불가피하게 휴식이 필요할 경우 교사에게 요청한다.

### 제7조【학습에 관한 권리】

-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자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제8조【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】

-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③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【휴식을 취할 권리】

-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10조【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
-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(절도행위 포함)했을 경우 해당 학생,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.

1)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용모 등 신체 조건,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(前科), 성적(性的) 지향, 학력, 병력(病歷) 등

## 제11조【용모】

-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.
- ② 타인을 비하·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,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.

## 제12조【사생활의 자유】

-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.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화하며,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.
-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.

④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은 허대하여서는 안 된다.

1. 성냥, 라이터
2. 담배
3. 주류
4. 기타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

## 제13조【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】

- 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## 제14조【정보에 관한 권리】

-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## 제15조【양심·종교와 표현의 자유】

-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④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지며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.
-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단,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만든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, 장소,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- ⑥ 학교의 장은 교지 등 언론활동,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적 지원을 한다.

## 제16조【건강에 관한 권리】

-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은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.
- ⑤ 학교의 시설물, 학교행사,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⑥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하거나 음주를 할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17조【사이버 생활】

-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든다.
-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③ 음란·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을 학교에 가지고 오거나 공유를 하지 않는다.
-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자신의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
## 제18조【전자기기 사용】

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① 학생이 휴대전화, 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 교육 목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.
-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.
- (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.)

## 제19조【기타 교내생활】

- ①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고,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- ② 방과 후나 휴일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 1.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
  2.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
  3. 수업시간이외의 특별교실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
- ④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특별실(전산실, 음악실, 체육관, 도서관 등)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.
- 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.

## 제20조【자치활동】

-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,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, 학생회,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.
-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.
-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,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.
-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.
- ⑦ 학생회 규정의 제·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.

## 제21조【교외생활】

-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여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.
- ② 학생은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키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- ③ 외부 단체 주관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- ⑤ 공중도덕과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- ⑥ 술, 담배 등 유해성 약물(본드, 가스흡입)을 복용과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.

## 제4장 학생교육

### 제22조【체벌 금지】

학교에서 체벌(體罰)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.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구에 의한 체벌
2.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
3. 반복적·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
4.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5.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

### 제23조 【교사의 권한】

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적 상담 및 조언
2. 교육환경 조성
3. 행동 개선 요구
4. 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
5.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
6.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

### 제24조【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】

-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.

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·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
2.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
3. 학습 과제 부여와 방과 후 교육
4. 훼손 시설·물품,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및 청소
5. 학부모 통보 및 상담
6.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

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25조【보호자의 책임과 의무】

- 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·정신적 피해보상을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
- ②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1.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
  2. 학생(자녀)의 교외생활 중 친구관계
  3.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한 행동
  4.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

## 제26조(장애학생의 보호)

-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징계

### 제27조【징계원칙】

초·중등교육법 제18조(학생의 징계 등)<sup>2)</sup>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.
-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.
-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.
- ④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.

2) 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법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28조【징계의 심의 및 재심】

-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.
-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,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(보호자)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29조【징계의 종류와 기간】

- ① 학교장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 내 봉사 :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2. 사회봉사 :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3. 특별교육이수 :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4. 출석정지 :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,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1회 10일 이내, 연간 30 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.
5. 훈계, 훈육, 교실에서 분리조치, 상담교육,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
### 제30조【징계의 방법】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 내 봉사 :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생활 담당 부서, 해당 학년 교사, 교감,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(교내 환경 미화, 교재·교구정비,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, 학교 자체 프로그램, 기타 적절한 활동 등)을 하여야 한다.
2. 사회봉사 :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,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.
3. 특별교육이수 :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·지정·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·치료를 받아야 한다.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 한다.
4. 출석정지 :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한다. 단, 보호자 요청 시 가정 학습이 가능함.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,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용은 기재하지 않는다.

### 제31조【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】

-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·품성·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(또는 상담교사)로부터 듣는다.

-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.

-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'위원회 개최', '의견진술(소명) 기회 보장', '대리인 선임권 보장'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(유선 통화일시,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)

### 제32조【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】

-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.
-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,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,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,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.
- ⑥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
### 제33조【장애학생 대상 징계】

- ①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(성폭력)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.
- ②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,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. 단, 일반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피해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격리조치 할 수 있다.

## 제6장 규정의 개정

### 제34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】

-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「규정개정심의위원회」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(학생생활교육 업무 담당자),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. 학생위원은 전체의 40%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35조 【개정안의 발의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  1.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
  2. 재직 교원의 과반수

3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
  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
  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
-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.

#### 제36조 【문헌조사 및 의견수렴】

-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제37조 【심의 및 결정】

-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
#### 제38조 【연수 및 교육】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
##### 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# 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# 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# 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# 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